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·도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729명에서 754명으로 25명 증원하고, 이에 맞추어 선거구구역표를 조정(25개 선거구 신설)함(안 [별표 2]).
- 시·도별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2,978명에서 3,003명으로 총 25명 증원하고, 이에 맞추어 총정수표를 조정하며,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하여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기준 27개 선거구에서 중·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함(안 [별표 3] 등).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시·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 중 광주광역시 지역 일부(4개 선거구)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함(부칙 제5조).
- 현행 지역구시·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인 비례대표시·도의원정수를 100분의 14로 상향함(안 제22조제4항).
-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에서 “금치산선고를 받은 자”를 삭제하고, 비방금지 대상 등에 “장애”를 추가함(안 제18조제1항제1호 등).

II. 검토의견

-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」 및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

‘통합특별시’가 신설될 예정인데,

현행법에서 약칭하고 있는 “시·도” 및 “시·도지사”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“시·도”(법 제8조의7제2항제1호의2) 및 “시·도지사”(법 제13조제1항제2호)의 범위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각각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.

- 위 사항에 대해 소관 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와 각각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마련함.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8조의7(선거방송토론위원회) ① (생 략)	제8조의7(선거방송토론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며, 위원의 임기는 제2호 후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으로 한 다.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 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1의2. <u>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 치시·도·특별자치도</u> 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선거관리위원 회에 설치하는 시·도선거방송 토론위원회(이하 “시·도선거 방송토론위원회”라 한다)	1의2. <u>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 역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, 공영방송사, 지상파방송사가 추천하는 각 1명,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·학계·법조계·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③ ~ ⑩ (생략)	③ ~ ⑩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선거구선거관리) ①選舉區選舉事務를 행할 選舉管理委員會(이하 “ <u>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</u> ”라 한다)는 다음各號와 같다.	제13조(선거구선거관리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特別市長</u> · <u>광역시장</u> · <u>특별자치시장</u> · <u>도지사</u> (이하 “ <u>市·道知事</u> ”라 한다)選舉와 比例代表選舉區市·道議會議員(이하 “ <u>比例代表市·道議員</u> ”이라 한다)選舉의 選舉區選舉事務는 市·道選舉管理委員會	2. <u>특별시장</u> · <u>통합특별시장</u> · <u>광역시장</u> ----- “ <u>시·도지사</u> ”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생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○ 또한, 안 [별표 1]은 “광주광역시” 및 “전라남도”의 명칭만을 “전남광주통합특별시”로 개정하고 있는데, 지방자치단체에서의 ‘통합특별시’ 위상을 고려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구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차원에서,

소관 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와 각각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[별표 1] ‘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’를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함.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의 견
[별표 1] 국회의원지역 선거구 구역표 (지역구 : 254)	[별표 1] 국회의원지역 선거구 구역표 (지역구 : 254)	[별표 1] 국회의원지역 선거구 구역표 (지역구 : 254)
선 거 구 역	선 거 구 역	선 거 구 역
서울특별시(지역구 : 48)	서울특별시(지역구 : 48)	서울특별시(지역구 : 48)
부산광역시(지역구 : 18)	부산광역시(지역구 : 18)	전남광주통합특별시(지역구 : 18)
...	...	부산광역시(지역구 : 18)
인천광역시(지역구 : 14)	인천광역시(지역구 : 14)	...
광주광역시(지역구 : 8)	전남광주통합특별시(지역구 : 8)	인천광역시(지역구 : 14)
대전광역시(지역구 : 7)	대전광역시(지역구 : 7)	대전광역시(지역구 : 7)
...	...	...
전북특별자치도(지역구 : 10)	전북특별자치도(지역구 : 10)	전북특별자치도(지역구 : 10)
전라남도(지역구 : 10)	전남광주통합특별시(지역구 : 10)	경상북도(지역구 : 13)
경상북도(지역구 : 13)	경상북도(지역구 : 13)	...
...	...	

- 그 밖에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최 기 도)